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B-BBEE] 안내서



- ◇ 본 안내문은 남아공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중 중요내용을 임의로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 ◇ 법적책임을 수반하는 BEE 등급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현지 BEE 전문 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하실 것을 추천하오며, KOTRA는 동 안내서와 관련 법적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흑인경제육성법 개요	4
II. 모범 실무규정 안내(B-BEE등급표)	7
III. 평가항목 및 기준	11
(1) 기업규모별 평가기준	11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3) 산업별 평가항목(Sectorcode)	21
IV. B-BBEE 적용사례	23

I

흑인경제육성법 개요

■ BEE(Black Economic Empowerment) 이니셔티브

-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의해 흑인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백인들의 경제적 부를 창출해온 왜곡된 경제제도를 수정 노력
- 약 80년간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흑인들(HDI; Historical Disadvantaged Individuals)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흑인 권익 지원 정책을 실시
 - 핵심 지원 전략은 ① 흑인(개인 및 집단)의 경영권·소유권·지배력 향상 ② 인적 자원 개발 ③ 고용 평등 ④ 흑인 소유 및 경영 기업 우선 조달 ⑤ 흑인 소유 및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 ¹⁾
- 동 이니셔티브는 B-BBEE법, 모범 실무규정(Codes of Good Practice),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갖추

■ 흑인경제육성법 제정배경 및 주요 개정 일지

〈흑인경제육성법 관련 일지〉

- 2003.12. B-BBEE법 제정(No. 53 of 2003)
- 2004. 1. B-BBEE법 공포
- 2007. 2. 모범 실무규정 공포(No. 29617)
- 2013.10. 개정 B-BBEE법안(No. 46 of 2013)
- 2013.10. 모범 실무규정 개정안 공포(No. 36928)('14.10. 발효)
- 2014. 1. 개정 B-BBEE법 공포
- 2014.10. 개정 B-BBEE법 발효(3조 b항 제외)
- 2014.10. 소규모기업(QSE) 관련 모범 실무규정안 공개(No.38076)
- 2015. 5. 신(新) 모범 실무규정 발효('14.10.에서 연기됨)
- 2015.10. 개정 B-BBEE법 3조 b항 발효

1)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mendment Act (No. 46 of 2013) 1조.

(1) 『B-BBEE법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No. 53 of 2003)) :

이하 BEE법』

- (주요배경) 1994년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 이후, 1996년에 완성된 남아공 민주 헌법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정책하에서 불이익을 받은 인종에 정부 조달 및 입찰시 특혜 부여를 명시함, 2000년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우대 구매정책법)을 거쳐, 2003년 B-BBEE가 제정에 이름
 - (주요내용) BEE 정책의 법적 체계 제공 : 개념 정의 및 해석, 흑인 경제 육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칙, 모범 실무 규칙(Codes of Good Practice)과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s)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15개 조항으로 구성
 - (1조) ‘흑인(Black people)’은 총칭의 개념으로 아프리카 흑인(Africans), 흑백 혼혈(Coloured), 남아공 태생의 인도후손(Indian)을 지칭(BEE법 1조)
- (중요) BEE 정책의 “흑인”의 정의는?

 - B-BBEE(2003년) : 아프리카 흑인, 흑백 혼혈, 남아공 태생의 인도후손
 - B-BBEE 개정(2013년) : 남아공 태생 및 이민자 후손인 남아공 시민권자, 1994년 4월 27일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한(혹은 자격이 주어진) 귀화한 외국인 내역을 추가
- (5~8조) BEE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위해 BEE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를 설립하고 대통령(의장)과 산업통상부 및 3명의 타 부처 장관, 이외에 10~15인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
 - (9~10조) 모범 실무규정은 (a)BEE 정책의 이행 지침으로 (b)우선 조달 등에 관한 자격 조건, (c)~(d)BEE 측정 기준 및 점수 (e)각 산업별 변혁 헌장 작성의 가이드라인 제공²⁾
 - (12조) 산업별 변혁 헌장은 효율적인 BEE 정책 집행을 위해 각 산업별로 이행 목표를 작성토록 함
 - 모범실무규정 및 변혁 헌장 제정 권한을 산업통상부(DTI) 장관에 부여함으로써 BEE 정책의 담당부처로 지정

2)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 (No. 53 of 2003) 9조.

(2) 『개정 B-BBEE법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Amendment Act (No. 46 of 2013): 이하 개정법)』

- ‘우선법 조항’(3조 2항) : BEE법이 기타 BEE 관련 법 및 조치에 우선함을 명시³⁾
- 개정법은 BEE의 ‘자발적 이행’ 으로 한정된 2003년 원법(原法)을 ‘강제적 준수’ 차원으로 강화
 - 특히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과 정부 인허가 획득 시 BEE 등급을 “가능한 한 고려 (as far as possible)해야 한다” 는 원법의 조항을 “반드시(must) 고려해야 한다 로 개정“⁴⁾
 - 남아공 공공기관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BEE 이행 보고를 의무화⁵⁾
- 원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반 및 처벌’ 조항을 첨가
 - BEE 위원회(commission)를 설립하여 BEE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BEE법 위반시(fronting practices) 소환 권한을 부여⁶⁾
 - 위법행위는 BEE 등급 조작 및 허위 제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해당 기업의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 10년 징역, 10년간 정부기관과의 거래 금지 조치 등임

3) Amendment Act 3조.

4) Amendment Act 6조.

5) Amendment Act 8조.

6) Amendment Act 8조.

II

모범 실무규정 안내(B-BBEE 등급표)

(1) 개관

- 남아공 흑인 경제육성 정책(BEE)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업의 흑인 경제육성 기여도를 5개의 범주(Code)로 나눠 평가
- 평가 점수(B-BBEE score)에 따라 각 기업의 BEE 이행 등급(B-BBEE status)이 결정됨
- 남아공 정부 조달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BEE 등급 획득이 필수
- 정부 외 거래에 있어서도 BEE 등급을 보유한 기업과의 거래에는 BEE 인정 등급(recognition level)이 부여되므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에 BEE 등급 획득이 필요

(2) 목표

- 흑인의 소유권 및 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
- 흑인의 소득 증가를 통한 인종 간 소득격차 축소
- 흑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투자 증대

(3) 발효

- 2007년 모범실무규칙을 발표, 2007년 2월 시행 실시
-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관보 No.36928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한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2015년 5월에 발효
 - '15.5.1. 이후의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모든 B-BBEE 인증은 동 개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산업별 섹터 코드는 제정 단계이므로 예외로 지정

(4) 적용 대상

-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을 거래 대상(undertake any economic activity)으로 하는 기업⁷⁾
- 정부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undertake any economic activity, whether direct or indirect)에 있는 기업⁸⁾

(중요) 산업(Sector Code) 및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적용 규정이 상이

- (산업별) 개별 기업은 해당 산업의 산업별 규정(sector code)에 의해 평가(BBBEE Act 9조)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세부산업별 규정은 제정 중이며 해당 산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기관 및 기업의 BEE 평가는 일반규정을 따름
- (매출규모별) 연간 매출액에 따라 대기업(generic), 소규모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 QSE), 영세기업(Exempted Micro-Enterprise: EME)으로 나누고 대기업은 일반코드를, 소규모기업과 영세기업은 소규모 점수표(QSE scorecard)를 적용

(5) 기업규모 별 분류

- 2013년 개정규정을 통해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액 확대

분류	연간 최소 매출액(만 랜드)	
	개정 전(2007년)	개정 후(2013년)
영세 기업(EMS)	500	1,000
소규모 기업(QSE)	3,500	5,000
대기업(Generic)	3,500 이상	5,000 이상

※ 환율 : 1 달러 = 약 15.01 랜드 (2015.12월 기준)

7) Gazette No.38076. p.6.

8) Gazette No.38076. p.6.

(6) B-BBEE 등급표

〈B-BBEE 등급표〉

B-BBEE 등급	합산 점수(점)		B-BBEE 인정 등급(%)
	개정 전(2007)	개정 후(2013)	
1	100 이상	100 이상	135
2	85~99	95~99	125
3	75~84	90~94	110
4	65~74	80~89	100
5	55~64	75~79	80
6	45~54	70~74	60
7	40~44	55~69	50
8	30~39	40~54	10
미준수	29 이하	39 이하	0

- 2013년 개정된 규정에 의거 등급별 취득 점수기준이 인상, 기업 및 남아공 정부와의 거래, 소유권 유지를 위해 ‘최소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됨

(7) 평가항목

〈B-BBEE 평가 항목 및 점수표(Generic Scorecard)〉

평가 항목	코드	점수(+보너스 점수)
*소유권(Ownership)	100	25
경영권(Management & Control)	200	15(+4)
*기술개발(Skills)	300	20(+5)
*신생기업 및 공급업자 발전(Enterprise & Supplier Development)	400	40(+4)
사회·경제 개발(Socio Economic Development)	500	5
합계		105(+13)

- (평가항목) 소유권, 경영권, 기술개발, 기업 및 공급업자 발전, 사회·경제 개발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2013년 개정을 통해 평가 항목(code)을 7개에서 5개로 축소)
- 개정 전 7개 항목 중 ‘경영권(200)’과 ‘고용평등(300)’을 ‘경영권(200)’에, ‘우선조달(500)’과 ‘기업 발전(600)’을 ‘기업 및 공급자 발전(400)’ 항목에 포함

- (필수항목) 2013년 개정을 통해 ‘필수항목(priority elements)’을 선정 및 최소 이행점수 부과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
- 평가 항목 5개 중 ①소유권 ②기술개발 ③기업 및 공급자 발전을 필수항목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항목별 점수를 상향
 - * 소유권(20점 → 25점), 기술개발(15점 → 20점), 기업 및 공급자 발전(35점 → 40점)
-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이행점수를 부과하고 이에 못 미치는 경우 BEE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는 패널티 부과

〈항목별 최소 이행점수 기준〉

항 목	최소 이행 점수 기준
소유권	순가치(Net Value) 점수의 40%임(8점의 40%).
기술개발	총점의 40%
기업 및 공급자발전	각 항목(우선조달, 공급자 발전, 기업 발전)점수의 40%

- 대기업의 경우 세 가지 필수항목을, 소규모 기업(QSE)은 적어도 두 개를 만족(소유권은 필수, 기술개발과 공급자·기업 개발 중 하나를 선택)시켜야 함
- * 영세기업(EME) 면제

III 평가 항목 및 기준

기업규모별 평가기준

(1) 영세기업(EME) : 연 매출이 1,000만 랜드 미만 기업

- 자동으로 4등급을 부여, 흑인 소유 51% 이상일 경우 2등급, 100%일 경우 1등급
* 구(舊) 규정에서는 영세기업(EME)과 흑인 소유 50% 이상의 신생기업은 3등급에 해당
-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위해 소규모기업(QSE) 점수표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수 있음
(is allowed to be measured)⁹⁾
- BEE 인증서(certificate) 대신 증명서(sworn affidavit)만 취득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연간매출액 및 흑인 소유 지분을 바탕으로 작성 필요¹⁰⁾
- 신생기업(1년 미만)은 연간 수익에 상관없이 영세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2) 소규모기업(QSE) : 연매출이 1,000만~5,000만 랜드에 해당하는 기업

- 각 평가 항목별로 소규모기업에 대한 점수 기준이 별도로 부과
- 단, 100% 흑인 소유는 1등급, 51% 흑인 소유 이상은 2등급 획득¹¹⁾
- 흑인 지분 51% 이상인 기업은 증명서(sworn affidavit)만 획득하면 되며 51% 미만인 기업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받아야 함

〈연매출 및 흑인 지분에 따른 BEE 평가 증명〉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	연간 매출액(만 랜드)	평가 증명	연간 매출액(만 랜드)	평가 증명
EME	500 미만	Certificate	1,000 미만	Affidavit
QSE(흑인 소유 51% 이상)	500~3,500	Certificate	1,000~5,000	Affidavit
QSE(흑인 소유 51% 미만)	3,500~500	Certificate	1,000~5,000	Certificate
Generic Enterprise	3,500 이상	Certificate	5,000 이상	Certificate

9) Gazette No.38076. p.9.

10) Gazette No.38076. p.9.

11) 소규모 기업(QSE)의 평가 점수표는 Gazette No.38076에서 공표됨 (2014.10.10).

〈소규모기업(QSE) 점수표〉

평가 항목	점수
소유권	25
경영권	15
기술개발	30
기업 및 공급자 발전	30
사회·경제 개발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소유권(Ownership)

- (정의) 소유권의 범위는 투표권 행사와 같은 직접적 참여 뿐 아니라 신탁, 협동조합 등을 통한 간접적 지분 참여까지 포함
- (최소이행요건) 소유권은 BEE 정책의 핵심 부문으로 최소 이행요건인 순 가치(Net Value) 항목 점수 40% 이상을 달성해야 함
 - * 순 가치(Net Value)는 흑인 지분을 측정하는데 있어 소유권 이전 시 부채를 제외한 상황시기별 실제 이전 가치를 의미
- (투과과세) 수입 및 납세에 대해 ‘투과과세(Flow-Through) 개념’을 적용
 - * 투과과세 단체(Flow-through Entity)의 소득은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아닌 구성원의 소득이 되며, 납세의무 역시 해당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납세 의무를 지님
- (성과연속인정) ‘Once empowered, always empowered’ 단체(기업)의 흑인 구성원이 지분 판매 등을 통해 해당 단체(기업)를 떠났을 경우에도 이미 흑인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고 기존 흑인 소유권 수준을 인정한다는 원칙

〈소유권 채점표(Ownership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투표권 ¹²⁾	흑인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	4	25%+1 투표권
	흑인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	2	10%
경제적 이익 ¹³⁾	해당 기업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지분)	4	25%
	해당 기업에서 흑인 여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지분)	2	10%
	해당 기업의 특정 그룹에 속하는 흑인의 경제적 이익(지분) - 지정 그룹(designated groups) ¹⁴⁾ - 직원 주식 참여 프로그램 ¹⁵⁾ (Employee Share Ownership Programmes) - 광범위 소유권 제도 ¹⁶⁾ (Broad-based Ownership Schemes) - 협동조합(Cooperatives)	3	3%
	신생 흑인 기업인(New Entrants)의 지분 취득 참여 ¹⁷⁾	2	2%
실현 점수 ¹⁸⁾	순 가치(Net Value)	8	

〈소규모기업 소유권 채점표(QSE Ownership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투표권	흑인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	5	25%+1 투표권
	흑인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경우	2	10%
경제적 이익	해당 기업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지분)	5	25%
	해당 기업에서 흑인 여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지분)	2	10%
	신생 흑인 기업인(New Entrants) 혹은 흑인 특정 그룹의 지분 취득 참여 ¹⁹⁾	3	2%
실현 점수 ²⁰⁾	순 가치(Net Value)	8	

12) 투표권(Voting Rights)의 계산 방법은 Gazette No.36928(11 Oct 2013) Annex 4 참고.

13) 경제적 이익(economic interest)의 계산 방법은 Gazette No.36928(11 Oct 2013) Annex 4 참고.

14) 지방 및 미개발지역 거주인, 장애인, 퇴역군인 등을 지칭(Gazette No.36928(11 Oct 2013)).

15) Annex 100(C) Gazette No.36928(11 Oct 2013)). pp.32~33.

16) Annex 100(B) Gazette No.36928(11 Oct 2013)). pp.30~31.

17) 신생 흑인 기업인은 한 기업의 지분상품(5천만 랜드 이상)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를 지칭(Gazette No.36928 (11 Oct 2013)).

18) 순 가치(Net Value)의 계산 방법은 Gazette No.36928(11 Oct 2013) Annex 4 참고.

19) 신생 흑인 기업인은 한 기업의 지분상품(5천만 랜드 이상)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를 지칭(Gazette No.36928 (11 Oct 2013)).

20) 순 가치(Net Value)의 계산 방법은 Gazette No.36928(11 Oct 2013) Annex 4 참고.

(2) 경영권(Management & Control)

- (정의) 경영권은 해당 기업의 각 직급(이사회,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에서 흑인의 비율과 총 흑인 장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일반 평가(generic code)에서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 계산은 인종별 경제활동가능인구(Economic Active Population: EAP)를 바탕으로 함²¹⁾
 - * 반드시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에 부합해야 함
- (평가방법) 경영권 평가 점수 획득을 위해서는 매년 ‘Employment Equity Report’ 제출필요

〈경영권 채점표(Management Control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이사회 참여	이사회에서 흑인 이사의 투표권 비율	2	50%
	이사회에서 흑인 여성 이사의 투표권 비율	1	25%
	흑인 임원 ²²⁾ 비율	2	50%
	흑인 여성 임원 ²³⁾ 비율	1	25%
기타 최고관리자 ²⁴⁾	기타 최고관리자 중 흑인 비율	2	60%
	기타 최고관리자 중 흑인 여성 비율	1	30%
고위관리자 ²⁵⁾	흑인 고위관리자 비율	2	60%
	흑인 여성 고위관리자 비율	1	30%
중간관리자 ²⁶⁾	흑인 중간관리자 비율	2	75%
	흑인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	1	38%
하급관리자 ²⁷⁾	흑인 하급관리자 비율	1	88%
	흑인 여성 하급관리자 비율	1	44%
장애 근로자	총 근로자 중 흑인 장애 근로자 비율	2	2%

〈소규모기업 경영권 채점표(QSE Management Control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 중 흑인 비율	5	50%
	최고관리자 중 흑인 여성 비율	2	25%
고위·중간·하급관리자	흑인 고위·중간·하급관리자 비율	6	60%
	흑인 여성 고위·중간·하급관리자 비율	2	30%

21) 부록 1 참고.

22) Executive directors.

23) Executive directors.

24) Black Executive Management.

25) Senior Management.

26) Middle Management.

27) Junior Management.

(3) 기술개발(Skills)

- (정의) 기술 개발은 각 산업별 흑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흑인 실업자의 고용 증대를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측정
- (최소이행점수) 기술개발은 필수항목 중 하나로 최소 이행점수는 총 점수의 40%
- (평가방법) SETA가 승인한 'Workplace Skill plan', 연간 'Training Report' 등이 요구되며 『기술개발법(Skill Development Act & Skill Levy Act)』에 부합해야 함

〈기술개발 채점표(Skill Development Element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총 과세대상 금액에서 흑인 기술 교육에 지출된 비용	흑인 기술 교육에 지출된 비용	8	6%
	흑인 장애 근로자 기술 교육에 지출된 비용	4	0.3%
교육훈련·견습·인턴	총 근로자 중 교육훈련·견습·인턴 과정에 참여한 흑인 근로자 비율	4	2.5%
	총 근로자 대비 교육훈련에 참여한 흑인 실업자 비율	4	2.5%
보너스 점수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에 고용된 흑인 수	5	100%

〈참고〉 세부적용 특이사항

- 개정 규정에서 흑인 기술 교육 지출 비용은 이전 3%에서 6%로 증가
- 기술 교육은 'Learning Programme Matrix'를 바탕으로 함
- 흑인 기술 교육 및 교육훈련 평가는 인종별 인구구성(sub-race group)을 바탕으로 함

〈소규모기업 기술개발 채점표(QSE Skill Development Element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총 과세대상 금액에서 흑인 기술 교육에 지출된 비용	흑인 기술 교육에 지출된 비용	15	3%
	흑인 여성 기술 교육에 지출된 비용	7	1%
	흑인 장애 근로자 기술 개발 교육에 지출된 비용	3	0.15%
보너스 점수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에 고용된 흑인 수	5	100%

〈Learning Programme Matrix〉

CATEGORY	NARRATIVE DESCRIPTION	DELIVERY MODE	LEARNING SITE	LEARNING ACHIEVEMENT
A	Institution – based theoretical instruction alone – formally assessed by the institute	Institutional instruction	Institutions such as: - Universities - Colleges - schools and - ABET providers	Recognized theoretical knowledge resulting in the achievement of a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issued by an accredited or registered formal institution of learning
B	Institution – based theoretical instruction, as well as some practical learning with an employer of in a simulated work environment – formally assessed through the institution	Mixed-mode delivery with institutional instruction as well as supervised learning in an appropriate workplace or simulated work environment	Institutions such as: - Universities - Colleges - Schools - ABET providers and the workplace	Theoretical knowledge and workplace experience with set requirements resulting in the achievement of a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issued by an accredited or registered formal institution of learning
C	Recognised or registered structured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workplace that is required after the achievement of a qualification – formally assessed by a statutory occupational of professional body	Structured learning in the workplace with mentoring or coaching	Workplace	Occupational or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formally recognized through registration or licensing
D	Occupationally directed instructional and work based learning program that requires a formal contract – formally assessed by an accredited body	Institutional instruction , together with structured, supervised experiential learning en the workplace	- Institution - Workplace	Theoretical knowledge and workplace learning, resulting in the achievement of a South African Qualification Authority registered qualification, a certificate of other similar occupational or professional qualification issued by an accredited or registered formal institution of learning
E	Occupationally directed instructional and work-based learning program that does not require a formal contract – formally assessed by an accredited body	Structured, supervised experiential learning in the workplace, which may include some institutional instruction	- Workplace - Some institutional providers - ABET providers	Credits awarded for registered unit standards
F	Occupationally direct informal instructional programmes	Structured information sharing or direct instruction involving workshops, seminars, conferences and short courses	- Institutions - Conference - Meetings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ttendance certificates and credits against registered unit standards (in some instances)
G	Work-based informal programmes	Informal training	Workplace	Increased understanding of job or work context or improved performance or skills

(4) 기업 · 공급자 발전(Enterprise & Supplier Development)

- (정의) 정부 조달을 위한 B-BBEE 준수기관 및 국내기업간 제품구매에 대한 평가를 정의, 2013년 개정을 통해 이전 규정에 없던 ‘공급자 발전(supplier development)’ 항목을 추가하여 국내 기업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최소이행점수) 기업 · 공급자 발전은 필수항목으로 최소 이행점수는 보너스 점수를 제외한 각 항목(우선조달, 공급자 발전, 기업 발전) 목표 점수의 40%
- (평가방법) 공급자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Benefit Factor Matrix’로 측정
- (Empowering Supplier) B-BBEE 준수기관(Empowering supplier)으로 지정된 업체를 통한 조달만이 BEE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 구(舊)규정에는 조달을 통해 BEE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B-BBEE 인증서(certificates)가 있는 기업과의 거래를 인정

Empowering Supplier란?

- BEE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남아공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하기 4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소규모기업(QSE) 경우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
- 조건
 - ① 임금 및 감가상각을 제외한 총 매출액의 25%이상을 남아공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서비스업인 경우 임금은 매출액에 포함되나 15%까지만 인정)
 - ② 신규고용의 50% 이상이 흑인인 경우
 - ③ 국내 제조 · 생산 · 조립 · 포장 등 원재료 국내 가공률이 최소 25% 이상인 경우
 - ④ 기술 이전(연간 12일 이상을 흑인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²⁸⁾
- 필요제출 서류
 - ① Current Tax Clearance certificate
 - ② Letter of Good Standing
 - ③ Proof of submission of WSP
 - ④ Proof of submission of EE Report
 - ⑤ Current OHS Certificate
 - ⑥ Proof that CIPC fees are paid up to date
- 기업규모별 기준
 - ① 영세기업(EME) 및 신생기업(Start-Ups)은 자동으로 B-BBEE 준수기관에 포함됨
 - ② 흑인 지분 51% 이상 소규모기업(QSE)은 자동으로 B-BBEE 준수기관에 포함됨

28) Gazette No.36928(11 Oct 2013)). pp.96~97.

Empowering Supplier란?

- BEE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남아공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하기 4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소규모기업(QSE) 경우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
- 조건
 - ① 임금 및 감가상각을 제외한 총 매출액의 25%이상을 남아공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서비스업인 경우 임금은 매출액에 포함되나 15%까지만 인정)
 - ② 신규고용의 50% 이상이 흑인인 경우
 - ③ 국내 제조·생산·조립·포장 등 원재료 국내 가공률이 최소 25% 이상인 경우
 - ④ 기술 이전(연간 12일 이상을 흑인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²⁹⁾
- 필요제출 서류
 - ① Current Tax Clearance certificate
 - ② Letter of Good Standing
 - ③ Proof of submission of WSP
 - ④ Proof of submission of EE Report
 - ⑤ Current OHS Certificate
 - ⑥ Proof that CIPC fees are paid up to date
- 기업규모별 기준
 - ① 영세기업(EME) 및 신생기업(Start-Ups)은 자동으로 B-BBEE 준수기관에 포함됨
 - ② 흑인 지분 51% 이상 소규모기업(QSE)은 자동으로 B-BBEE 준수기관에 포함됨

〈참고〉 세부적용 특이사항

- 총 조달 비용 대비 BEE 준수기관으로부터의 조달 목표는 70%에서 2013년 개정시 80%로 증가 하였으며, 소규모(QSE) 및 흑인 소유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배점은 8점에서 17점으로 증가
- 입찰 기업의 하도급 수준이 25%이상일 경우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BEE 점수이상을 획득해야 함
- 공급자 발전 항목의 수혜 기업은 기업발전 항목에 따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29) Gazette No.36928(11 Oct 2013)). pp.96~97.

〈기업·공급자 발전 채점표(Enterprise and Supplier Development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우선조달	총 조달비용 중 BEE 준수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5	80%
	총 조달비용 중 면제된 영세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3	15%
	총 조달비용 중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4	15%
	총 조달비용 중 흑인 지분이 51% 이상인 BEE준수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9	40%
	총 조달비용 중 흑인 여성 지분이 30% 이상인 BEE 준수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4	12%
보너스 점수	흑인 지분이 51%이상인 지정그룹 ³⁰⁾ 으로부터 조달	2	2%
공급자 발전	공급자 발전을 위한 연간 지출액 ³¹⁾	10	세금공제 후 순이익의 2%
기업 발전	기업 발전을 위한 연간 지출액 ³²⁾ 및 산업 부문별 프로그램 ³³⁾ 을 위한 연간 지출액	5	세금공제 후 순이익의 1%
보너스 점수	기업 발전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이 공급 기업이 된 경우	1	
	공급자·기업 발전 프로그램 결과 창출된 일자리 수	1	

〈소규모기업 기업·공급자 발전 채점표(QSE Enterprise and Supplier Development Scorecard)〉

평가기준		점수	이행 목표
우선조달	총 조달비용 중 BEE 준수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15	60%
	총 조달비용 중 흑인 지분이 51% 이상인 BEE준수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5	15%
보너스 점수	흑인 지분이 51% 이상인 지정그룹 ³⁴⁾ 으로부터 조달	1	1%
공급자 발전	공급자 발전을 위한 연간 지출액	5	세금공제 후 순이익의 1%
기업 발전	기업 발전을 위한 연간 지출액 및 산업 부문별 프로그램을 위한 연간 지출액	5	세금공제 후 순이익의 1%

30) 지방 및 미개발지역 거주인, 장애인, 퇴역군인 등을 지칭(Gazette No.36928(11 Oct 2013)).

31) 공급자 발전을 위한 연간 지출액(Supplier Development Contribution)은 투자, 대출, 개런티, 각종 신용상품 등을 포함(Gazette No.36928(11 Oct 2013)). pp.71~74.

32) 기업 발전을 위한 연간 지출액(Enterprise Development Contribution)은 투자, 대출, 개런티, 각종 신용상품 등을 포함(Gazette No.36928(11 Oct 2013)). pp.71~74.

33) Sector Specific Programme.

34) 지방 및 미개발지역 거주인, 장애인, 퇴역군인 등을 지칭(Gazette No.36928(11 Oct 2013)).

5Benefit Factor Matrix(공급자 발전)》

Qualifying Contribution Type	Contribution Amount	Benefit Factor
Grant and Related Contributions		
Grant Contribution	Full Grant Amount	100%
Direct Cost incurred in supporting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Verifiable Cost (including both monetary and non-monetary)	100%
Discounts in addition to normal business practices supporting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Discount Amount (in addition to normal business discount)	100%
Overhead Costs incurred in supporting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including people appointed in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Verifiable Costs (including both monetary and non-monetary)	70%
Loans and Related Contributions		
Interest-Free Loan with no security requirements supporting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Outstanding Loan Amount	70%
Standard Loan to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Outstanding Loan Amount	50%
Guarantees provided on behalf of a Beneficiary Entity	Guarantee Amount	3%
Lower Interest Rate	Outstanding Loan Amount	Prime Rate – Actual Rate
Equity Investments and Related Contributions		
Minority Investments in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beneficiaries	Investment Amount	70%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Investment with lower dividend to financier	Investment Amount	Dividend Rate of Ordinary Shareholders – Actual Dividend Rate of Contributor
Contributions made in the form of human resource capacity		
Professional services rendered at no cost and supporting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Commercial hourly rate of professional	60%
Professional services rendered at a discount and supporting enterprise development and supplier development	Value of discount based on commercial hourly rate of professional	60%
Time of employees of Measured Entity productively deployed in assisting beneficiaries	Monthly salary divided by 160	60%
Other Contributions		
Shorter Payment periods for supplier development (par 2.2)	Percentage of invoiced amount multiplied by 15% (being an approximation of the cost of short term funding)	Percentage being 15 days less the number of days from invoice to payment. Maximum points that can be scored is 15% of 10 points

(5) 사회 · 경제 개발(Socio Economic Development)

- (정의) 기업의 사회 · 경제적 발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으로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모두 포함
 - * 비금전적 지원은 무료 전문가 서비스 등 인적자원 제공을 지칭
- 동 평가항목의 수혜 대상이 단체일 경우 해당 그룹 수혜자의 75% 이상이 흑인일 경우 점수가 100% 부과되며, 그 이하일 경우 흑인 구성 비율에 따라 점수 부과
- 이행 목표는 세금공제 후 기업 순이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점은 5점
- 동 항목의 기여도는 'Benefit Factor Matrix'로 측정

〈Benefit Factor Matrix(사회 · 경제개발)〉

Contribution Type	Contribution Amount	Benefit Factor
Grant and related contributions		
Grant contribution	Full Grant Amount	100%
Direct Costs incurred in suppor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ctor specific initiatives or qualify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s	Verifiable Cost (monetary and non-monetary)	100%
Discounts in addition to normal business practice suppor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ctor specific initiatives or qualify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s	Discount Amount (in addition to normal business discount)	100%
Overhead costs incurred in suppor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ctor specific initiatives or qualify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s.	Verifiable Cost (monetary and non-monetary)	80%
Contributions made in the form of Human Resource Capacity		
Professional services rendered at no cost suppor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ctor specific initiatives or qualify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s	Commercial Hourly Rate of Professional	80%
Professional services rendered at a discount suppor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ctor specific initiatives or qualify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s	Value of discount based on commercial hourly rate of professional	80%
Time of employees of enterprise productively deployed in assisting beneficiaries and support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sector specific initiatives or qualify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s	Monthly salary divided by 160	80%

산업별 평가항목(Sectorcode)

- B-BBEE법 제9조는 각 산업별로 전환(변환) 헌장(transformation charter) 및 평가항목(섹터코드)을 제정 · 공표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업, 광업 등 9개 산업별 헌장 및 섹터 코드가 공표된 바 있음

〈광산 헌장(Mining Charter) 주요 내용(2010)〉

- 2014년까지 흑인 지분(black ownership)을 26%까지 확대
- 2014년까지 광산업체 관리자급 내 흑인 비중을 40%까지 확대
- 광부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인 호스텔 시스템(hostel system)을 1인 1실이 가능한 하우스(housing)으로 개선

- 이전 섹터 코드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조율(aligned) 및 공표(gazetted) 되어야 하며 동년 11월 1일부터 신(新)섹터 코드가 발효됨
- 동 기한까지 공표되지 못한 섹터 코드는 폐기(repealed)되며 일반 항목(Generic Codes)의 평가 기준을 따름
- 개정안에 따르면 섹터 코드는 일반 항목의 최소 목표 점수를 상회하여야 함
- 2015.12월 현재까지 새로 공표된 섹터코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건설업은 이전 섹터 코드를 폐기하고 일반 항목의 평가기준을 따름
 - * '15.11.19 산림업 섹터 코드 개정안이 공표

IV

B-BBEE 적용사례

❖ (사례1) 2005년 남아공에 진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입니다. 2015년 5월 신 모범실무규정 발효로 BEE 등급이 기존 4등급에서 최하등급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조달이 아니라면 일반 상거래에서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 정부조달에 필수 사항이나, 일반 상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평가항목 중 Enterprise & Supplier Development에서 제품 조달 기업의 BEE 등급을 고려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귀사가 남아공 대기업 W에게 납품을 추진 중이라고 가정하자. 귀사는 경쟁기업 A(BEE 2등급)와 같은 품질의 제품에 대해, 동일한(혹은 약간 싼) 가격을 제시했으나, W는 결국 A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W는 A기업으로 제품을 구입시 B-BBEE 채점표상 125%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더 높은 BEE 등급 획득을 위해서는 A기업을 선택해야만 한다.

❖ (사례2) 남아공에서 BEE 파트너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촉중인 파트너는 아시아인이나, 본인이 흑인경제육성법 상의 흑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흑인경제육성법상 HDI(Historical Disadvantaged Individuals)는 흑인뿐만 아니라, 흑백혼혈·인도인·남아공 태생의 인도후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27일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한(혹은 자격이 주어진) 외국인도 포함되므로, 아시아인이라 할지라도 1994년 4월 27일 이전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면, 흑인경제육성법상 포괄적인 흑인에 포함됩니다.

❖ (사례3) 매출 R 3,000 만이며, 설립은 2000년입니다. 현재 흑인 소유비율이 60%수준인데, Empowering Supplier가 되기 위한 조건과 BEE 등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 매출 R 1000~5000 구간일 경우, QSE로 분류됩니다. 또한 QSE 경우 흑인 소유비율이 51%일 경우 자동으로 BEE 등급은 2등급 부여되며, Empowering Supplier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흑인 소유비율과 매출액에 대한 확인 증명서(Affidavit)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QSE가 100% 흑인소유를 달성시 BEE 자동 1등급이 부여 됩니다.

❖ (사례4) 2015년 남아공에 진출한 신생기업입니다. 매출은 R 500만 수준이며, 아직 흑인 직원 채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BEE 등급 부여가 가능할까요?

⇒ 자동적으로 4등급 부여가 됩니다. 흑인 소유권을 51%이상만 유지하면 2등급으로, 100%로 확대한다면 1등급으로도 상승 가능합니다.

❖ (사례5) 현지 건축업, 인테리어를 하는 기업입니다. 2000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매출은 연간 R 900만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흑인지분은 60% 수준인데, 새로운 BEE 규정에 필수항목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이 되나요?

⇒ 현재 동기업은 증명서(Sworn Affidavit)으로 2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수조건 중 2가지를 만족해야하므로 소유권 외에 기술개발 혹은 기업 및 공급자 발전에 최소 필수조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R 1000만을 넘어설 경우는 필수조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BEE 등급을 별도로 새로 인증 받아야 합니다.

첨부 1

경영권 평가 계산법(컨설팅 원문)

The following calculation method must be applied for calculating indicators for Senior, Middle and Junior Management for both Black as well as Black Women, on the Management & Control element

If an entity operates in more than one province the National EAP targets will apply. If the entity operates in one province only, the regional EAP targets for that specific province will apply.

The maximum points per race group needs to be adhered to in order to achieve the outcomes. This calculation will have to be repeated for every sub race group.

Step 1 :

Calculate the percentage AM, CM, IM, AF, CF and IF employees that are employed on the specific indicator

Step 2 :

Determine the EAP targets for each race group (from the CEE report)

Step 3 (Adjusted EAP Targets) :

White employe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therefore the EAP targets should be adjusted accordingly.

Step 4 (Split Compliance Target) :

The target for Senior Management is 60%

Now we have to adjust the above targets according to the target for Senior Management

첨부 2

경기술개발 평가 계산법(컨설팅 원문)

In terms of the Revised Codes of Good Practice, we have to apply the following formula in order to calculate the points an entity will score on the following indicators:

- 1.1 Skills Development Expenditure on Learning Programmes for black people as a percentage of Leviable Amount;
- 2.1 Number of black people participating in Learnerships, Apprenticeships and Internships as a % of total employees.
- 2.2 Number of black unemployed people participating in Learnerships, Apprenticeships and Internships as a % of total employees.

The EAP targets are published yearly in the Commission on Employment Equity (CEE) Report. If an entity operates in more than one province the National EAP targets will apply. If the entity operates in one province only, the regional EAP targets for that specific province will apply.

Step 1 : Calculate the percentage spent on training for each sub-race group

Step 2 : Determine the EAP targets for each race group (from the CEE report)

Step 3 : White employe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therefore the EAP targets should be adjusted accordingly.

Step 4 (Split Compliance Target) : The target for Skills is 6%. Now we have to adjust the above targets according to the target for Skills

Step 5 (Maximum Allowable Points) : The points allocated for the measurement criteria will also be split in proportion to EAP statistics. The split points for the measurement criteria represent the maximum allowable points for the race groups, and must be enforced as such.

Step 6 : Score achieved per race group will be calculated as follows:

$$\text{Step 1} / \text{Step 4} \times \text{Step 5}$$



[작성자]

- ◆ 아프리카 지역본부 김영웅 본부장
- ◆ 본사 중아CIS팀 임현진 사원



KOTRA자료 16-002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B-BBEE] 안내서

발 행 인 | 김 재 흥
발 행 처 | KOTRA
편 집 인 | 윤 원 석
발 행 일 | 2016년 1월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2) 1600-7119(대표)
전 화 | www.kotra.or.kr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ISBN : 979-11-86926-92-5 (93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